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08호 2021. 9. 16(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15호[울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16호[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17호[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02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04호[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08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09호[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2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10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2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142호[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2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162호[2021년 숲가꾸기 사업 시행 공고] 26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2, 행정712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15호

울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산광역시북구지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

한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산광역시북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 나. 활동 지원 대상 사업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제3조)
- 다. 보조금 지원,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 라.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제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16호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 매체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제 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공공시설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단체가 울산광역시 북구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다. 지원계획 수립,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공시설 활용, 우수콘텐츠 활용, 보조금 준용에 관한 사항(제6조 ~ 제9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17호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2. “혁신교육”이란 지역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민·관·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유관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

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5.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울산광역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북구와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
3. 지역사회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4.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비용부담) 북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시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학교·개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2. 혁신교육지구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3.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북구와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북구 관내 유치원 원장, 초·중·고등학교의 장

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구 혁신교육지구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검토
2.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
3. 사업 및 프로그램 실행 점검 및 실무 지원
4.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5.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평가 준비
6.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
7. 그 밖의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 관내 교육기관,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 나. 혁신교육지구 사업 범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 다. 비용부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 라.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제7조 ~ 제13조)
- 마.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제14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02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23길 8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양정동 771-1	하천의 명칭	○ 염포천
점용 내용	○ 전력전주 설치공사	점용 면적	○ 일시: 2.80㎡ ○ 영구: 0.51㎡
점용 기간	○ 일시: 2021. 9. 10. ~ 2021. 9. 11. ○ 영구: 2021. 9. 12. ~ 2025.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04호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5항(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공사 명칭 :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하천공사(염포천)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대표장 이승훈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3. 하천공사의 목적 : 염포지역주택조합에서 실시하는 소1-10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염포교 및 염포천 정비공사
4. 하천공사의 위치
가. 위치 : 염포동 43-1번지 및 양정동 516번지 일원
나. 면적 : 6,717㎡
5. 하천공사의 기간 : 2021. 9. ~ 11. 30.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토지 등에 관한 소유자 : 별첨 참조

편입토지조서(통합)

번호	소재지 북 구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합계	하천점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염포동	43-1	전	144.0	7.0	7.0	염포현대지역 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진장동)				
2	염포동	43-4	전	17.0	12.0	12.0	염포현대지역 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진장동)				
3	염포동	961-30	천	335.0	293.0	293.0	국(국토교통부)					
4	염포동	961-35	천	786.0	714.0	714.0	국(국토교통부)					
5	염포동	961-38	천	13.0	13.0	13.0	국(국토교통부)					
6	염포동	961-39	천	192.0	47.0	47.0	국(국토교통부)					
7	염포동	961-40	천	140.0	27.0	27.0	국(국토교통부)					
8	염포동	961-49	천	6.0	6.0	6.0	국(국토교통부)					
9	염포동	961-50	천	41.0	16.0	16.0	국(국토교통부)					
10	염포동	961-52	천	84.0	75.0	75.0	국(국토교통부)					
11	염포동	961-54	천	197.0	197.0	197.0	국(국토교통부)					
12	염포동	961-55	천	11.0	11.0	11.0	국(국토교통부)					
13	염포동	963-2	잡	1.0	1.0	1.0	국(기획재정부)					
14	양정동	516	임	1,167.0	98.0	98.0	박*옥	울산광역시 중구 명륜로				
15	양정동	517-3	대	549.0	43.0	43.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북 구				합계	하천점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6	양정동	517-4	대	266.0	7.0	7.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17	양정동	517-6	대	16.0	16.0	16.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18	양정동	556-29	임	109.0	109.0	109.0	염포현대지역 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진장동)				
19	양정동	556-33	임	79.0	79.0	79.0	염포현대지역 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진장동)				
20	양정동	771	천	1,208.0	1,018.0	1,018.0	국(국토교통부)					
21	양정동	771-1	구	24,376.0	546.0	546.0	국(국토교통부)					
22	양정동	771-8	구	20.0	20.0	20.0	국(국토교통부)					
23	양정동	771-9	구	2,365.0	1,110.0	1,110.0	국(국토교통부)					
24	양정동	771-10	구	764.0	763.0	763.0	국(국토교통부)					
25	양정동	771-11	구	271.0	266.0	266.0	국(국토교통부)					
26	양정동	771-12	구	10.0	10.0	10.0	국(국토교통부)					
27	양정동	771-14	천	32.0	32.0	32.0	국(국토교통부)					
28	양정동	772-1	천	3.0	3.0	3.0	국(국토교통부)					
29	양정동	772-6	천	34.0	34.0	34.0	국(국토교통부)					
30	양정동	772-7	천	284.0	27.0	27.0	국(국토교통부)					
31	양정동	772-8	천	24.0	24.0	24.0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북 구				합계	하천점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32	양정동	773-19	도	5.0	4.0	4.0	국(국토교통부)					
33	양정동	773-20	도	13.0	13.0	13.0	국(국토교통부)					
34	양정동	773-28	도	422.0	1.0	1.0	국(국토교통부)					
35	양정동	773-30	도	29.0	12.0	12.0	국(국토교통부)					
36	양정동	773-31	도	1.0	1.0	1.0	국(국토교통부)					
37	양정동	773-32	도	4.0	4.0	4.0	국(국토교통부)					
38	양정동	산114	임	40,301.0	1,058.0	1,058.0	국(산림청)					
합계				74,319.0	6,717.0	6,717.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08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대표 송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260-10번지		
점용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정동 517-4번지 일원 ○ 양정동 772-7번번지 일원 ○ 염포동 961-50번지 일원 ○ 염포동 961-40번지 일원 ○ 염포동 43-4번지 일원 	하천의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포천 ○ 염포천 ○ 염포천 ○ 염포천 ○ 염포천
점용 내용	○ 도시가스 매설공사	점용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8.8㎡ ○ 영구: 3.52㎡
점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 9. 15. ~ 2021. 10. 14. ○ 영구: 2021. 10. 15. ~ 2025.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09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16.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의회 의결일자 : 2021. 9. 1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73,173,531	100.00%	445,043,723	100.00%	28,129,808	6.32%
일반회계	461,414,580	97.51%	433,642,834	97.44%	27,771,746	6.40%
특별회계	11,758,951	2.49%	11,400,889	2.56%	358,062	3.14%
기타특별회계	11,758,951	2.49%	11,400,889	2.56%	358,062	3.1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38,465	0.05%	186,961	0.04%	51,504	27.5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1,338	0.02%	71,338	0.02%	0	0.00%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7,905,143	1.67%	7,905,143	1.78%	0	0.00%
주차장특별회계	3,544,005	0.75%	3,237,447	0.73%	306,558	9.47%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장·관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61,414,580	100.00 %	433,642,834	100.00 %	27,771,746	6.40%
100 지방세수입	80,845,230	17.52 %	78,337,000	18.06 %	2,508,230	3.20%
110 지방세	80,845,230	17.52 %	78,337,000	18.06 %	2,508,230	3.20%
200 세외수입	32,234,123	6.99 %	25,566,494	5.90 %	6,667,629	26.08%
210 경상적세외수입	17,523,619	3.80 %	18,982,711	4.38 %	△1,459,092	△7.69%
220 임시적세외수입	7,378,380	1.60 %	5,685,323	1.31 %	1,693,057	29.78%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332,124	1.59 %	898,460	0.21 %	6,433,664	716.08%
300 지방교부세	21,428,000	4.64 %	19,767,000	4.56 %	1,661,000	8.40%
310 지방교부세	21,428,000	4.64 %	19,767,000	4.56 %	1,661,000	8.40%
400 조정교부금등	50,790,300	11.01 %	50,195,300	11.58 %	595,000	1.19%
410 자치구조조정교부금등	50,790,300	11.01 %	50,195,300	11.58 %	595,000	1.19%
500 보조금	254,177,692	55.09 %	238,271,183	54.95 %	15,906,509	6.68%
510 국고보조금등	158,661,337	34.39 %	150,335,406	34.67 %	8,325,931	5.54%
520 시·도비보조금등	95,516,355	20.70 %	87,935,777	20.28 %	7,580,578	8.62%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939,235	4.75 %	21,505,857	4.96 %	433,378	2.02%
710 보전수입등	21,437,038	4.65 %	21,003,660	4.84 %	433,378	2.06%
720 내부거래	502,197	0.11 %	502,197	0.12 %	0	0.00%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61,414,580	100.00 %	433,642,834	100.00 %	27,771,746	6.40 %
010 일반공공행정	21,507,478	4.66 %	18,987,751	4.38 %	2,519,727	13.27 %
020 공공질서및안전	2,741,865	0.59 %	2,622,134	0.60 %	119,731	4.57 %
050 교육	1,526,464	0.33 %	1,569,720	0.36 %	△43,256	△2.76 %
060 문화및관광	32,063,257	6.95 %	31,970,048	7.37 %	93,209	0.29 %
070 환경	14,126,923	3.06 %	12,945,478	2.99 %	1,181,445	9.13 %
080 사회복지	243,452,551	52.76 %	229,493,639	52.92 %	13,958,912	6.08 %
090 보건	14,193,453	3.08 %	12,704,521	2.93 %	1,488,932	11.72 %
100 농림해양수산	26,441,299	5.73 %	25,328,430	5.84 %	1,112,869	4.39 %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34,502	0.57 %	2,938,853	0.68 %	△304,351	△10.36 %
120 교통및물류	12,535,550	2.72 %	8,661,048	2.00 %	3,874,502	44.73 %
140 국토및지역개발	23,529,883	5.10 %	22,554,277	5.20 %	975,606	4.33 %
160 예비비	6,013,374	1.30 %	4,254,995	0.98 %	1,758,379	41.33 %
900 기타	60,647,981	13.14 %	59,611,940	13.75 %	1,036,041	1.74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1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달천만석골길 24	달천동 379	2021. 9. 16.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9.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1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대곡산비료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234-11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B=4m, L=523m

구분	시설명(노선명)	규모		비고
		폭(m)	길이(m)	
도로	소로2-331호선	4	57	금회개설
도로	소로 3-276호선	4	466	금회개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농업회사법인 대곡산비료(주) 대표 박종근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845-6번지

5. 사업기간 : (당초)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1. 6. 30.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1. 12. 31.

6. 설계변경 : (당초) 포장공: 순환골재 (보조기층)

(변경) 포장공: 재생골재 (보조기층)

7.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참조
8. 열람기간 : 2021. 9. 16.(목) ~ 2021. 9. 30.(목)
9.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번호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m ²)									소유자		비고
				소2-331호선			소3-276호선			계			성명	주소	
				도로	사면	소계	도로	사면	소계	도로	사면	계			
1	614-3	답	395	103	56	159				103	56	159	국(건설교통부)		
2	854-1	답	1,192				110	575	685	110	575	685	국(건설교통부)		
3	920	천	32,009				39	210	249	39	210	249	국(건설교통부)		
4	920-23	천	1,001	25		25				25		25	국(건설교통부)		
5	산187-1	임	2,581	1		1				1		1	울산광역시		
6	산187-5	임	1,522	8		8				8		8	울산광역시		
7	산191-5	임	1,535	75	181	256	38	508	546	113	689	802	국(건설교통부)		
8	산191-8	임	283	71	65	136				71	65	136	국(건설교통부)		
9	산192-2	임	2,714				246	439	685	246	439	685	국(건설교통부)		
10	산192-3	임	506				73	178	251	73	178	251	국(건설교통부)		
11	산194-5	임	10,071				392	964	1,356	392	964	1,356	국(건설교통부)		
12	산204-1	임	7,470				385	1,516	1,901	385	1,516	1,901	국(건설교통부)		
13	산234-11	임	12,180				702	1,710	2,412	702	1,710	2,412	국(건설교통부)		
계			73,459	283	302	585	1,985	6,100	8,085	2,268	6,402	8,67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162호

2021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2021년 숲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토지)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무응답, 수취인 불명 또는 미거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 업 명 : 2021년 숲가꾸기사업(어린나무 가꾸기)
2. 대 상 지 : 붙임 참조
3. 사업기간 : 2021. 8. ~ 2021. 10.
4. 사업내용 : 가지치기, 경계 표시 등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공고기간 중 대상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 동의여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위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추진

다.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면적 및 대상지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그 외 사업추진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복구청 공원녹지과 산림계(☎052-241-7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 대상지 필지별 조서 각 1부. 끝.

2021년도 숲가꾸기 토지조서

구	동	지번	지목	지적	제외	사업(m2)	사업(ha)	비고
북구	시례동	산51-2	임	10,881	881	10,000	1.00	사유림
북구	시례동	산51-3	임	3,214	214	3,000	0.30	사유림
북구	상안동	1086	임	1,207	207	1,000	0.10	사유림
북구	상안동	산107	임	52,860	22,860	30,000	3.00	사유림
계		4필지		68,162	24,162	44,000	4	

※ 개인, 종중, 법인, 기타-사 구유지, 사유지, 구청, 군청-공유지 국유지,국토건설부-국유지